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1. 2.

특 허 청
(특허심사제도과)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유전자 서열을 포함하는 출원에 대해 서열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국제 표준이 전환(2022. 1. 1. 예정)되는 등 관련된 대내외 법령 및 제도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정합성 제고를 위해 관련된 세부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열목록 제출 국제표준 전환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안 제3조, 제4조, 제13조의5)

유전자 서열을 포함하는 출원에 대해서 서열목록을 전자파일로만 제출하게 하는 특허협력조약(PCT) 규칙 개정 사항을 국내 규정에 반영하고, 전자파일로 제출된 서열목록에 대해 명세서에 기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시함.

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인감증명 대체 가능 사실 명시(안 별지서식 제1호)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관련 서식의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려워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식에

병기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다. 실용신안등록증 별지 서식 내용의 명확화(안 별지서식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7, 제2호의9, 제4호부터 제12호)

실용신안등록증 서식에 기재된 사항을 현행화하고 정확한 문구로 변경하여 명확화하는 한편,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에 “휴대용” 명칭을 표시하여 구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2호·제4호·제5호 및 제7호”를 “제3항제2호·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7. 서열목록(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명세서에 적고, 그 서열목록을 수록”을 “수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서열목록은 명세서의 고안의 설명에 기재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10개 미만의 핵산염기 서열 또는 4개 미만의 아미노산 서열인 경우로서 해당 서열목록을 명세서의 고안의 설명에 기재하려면 서열목록전자파일에 수록하지 않고 명세서의 고안의 설명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의5제1호 중 “서열목록전자파일(같은 항 단서에 따라 서열목록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서열목록전자파일 형식으로 명세서에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서열목록전자파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13호다목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7서식, 별지 제2호의9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4항, 제4조 및 제13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국제출원일이 2022년 1월 1일 전인 국제출원 또는 원출원의 출원일이 2022년 1월 1일 전인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3항·제4항, 제4조 및 제13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실용신안등록증

CERTIFICATE OF UTILITY MODEL REGISTRATION

등록 Registration Number	제	호
출원번호 Application Number	제	호
출원일 Filing Date	년 월 일	
등록일 Registration Date	년 월 일	

고안의 명칭 Title of the Device

실용신안권자 Owner of the Utility Model Right

발명자 Deviser

위의 고안은 「실용신안법」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Utility Model Act, a utility model for the device has been registered at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년 월 일
특허청장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직 인

서 명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CERTIFICATE OF UTILITY MODEL REGISTRATION

Registration Number

Application Number

Filing Date

Registration Date

Title of the Device

Owner of the Utility Model Right

Deviser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Utility Model Act, a utility model for the device has been registered at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서 명

직 인

CERTIFICADO DE **REGISTRO** DE MODELO DE UTILIDAD

N° de patente

N° de solicitud

Fecha de solicitud

N° de registraci3n

Título del dispositivo

Titular del derecho de modelo de utilidad

Inventor

Se certifica que el dispositivo arriba mencionado ha sido registrado en el registro dela Oficina de Propiedad Intelectual de Corea de acuerdo a la Ley de Modelo de Utilidad.

Director de la Oficina de Propiedad Intelectual de Corea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직 인

서 명

شهادة تسجيل نموذج المنفعة

رقم التسجيل

رقم الطلب

تاريخ الملاء

تاريخ التسجيل

اسم الجهاز

صاحب حقوق الاستفادة من الموديل

المصمم الأصلي

هذا للشهادة بأن الجهاز المشار إليه أعلاه مسجل لدى مكتب سجل حقوق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كوري

رئيس مكتب حقوق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كوري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직인

서명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

PORTABLE CERTIFICATE OF UTILITY MODEL REGISTRATION

이
날
제
호

Registration Number

출원번호 제 호

Application Number

출원일
Filing Date

Registration Date

고안의 명칭 Title of the Device

실용신안권자 Patentee Owner of the Utility Model Right

고안자 Deviser

위의 고안은 「실용신안법」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Utility Model Act, a utility model for the device has been registered at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이
아
그

특허청장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직 인

서명

등록사항

210mm×148mm(보존용지(1종) 120g/m²)

PORTABLE CERTIFICATE OF UTILITY MODEL REGISTRATION

Registration Number

Application Number

Filing Date

Registration Date

Title of the Device

Patentee Owner of the Utility Model Right

Deviser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Utility Model Act, a utility model for the device has been registered at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서명

ICE

210mm×148mm(보존용지(1종) 120g/㎡)

携帶用実用新案登録証

登 錄 第 号

出願番号

出願日

登錄日

考案の名称

實用新案權者

考案者

上の考案は「実用新案法」によって実用新案登録原簿に登録されたことを証明します。

特許庁長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직 인

서명

210mm×148mm(보존용지(1종) 120g/m²)

Gebrauchsmusterurkunde im transportierbaren Format

Registrationsnummer

Application Number

Filing Date

Registration Date

Bezeichnung des Gerätes

Rechtinhaber des Gebrauchsmusters

Erfinder

Hiermit wird bescheinigt, dass gemäß des [Gebrauchsmustergesetzes] das Gerät in das Register der koreanischen Amt für geistiges Eigentum eingetragen ist.

Patentamt, Korea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직 인

서명

210mm×148mm(보존용지(1종) 120g/m²)

Certificat matricule du modèle d'utilité **portable**

Numéro matricule

Numéro d'application

Date d'application

Date d'inscription

Dénomination d'invention

Propriétaire du droit du modèle d'utilit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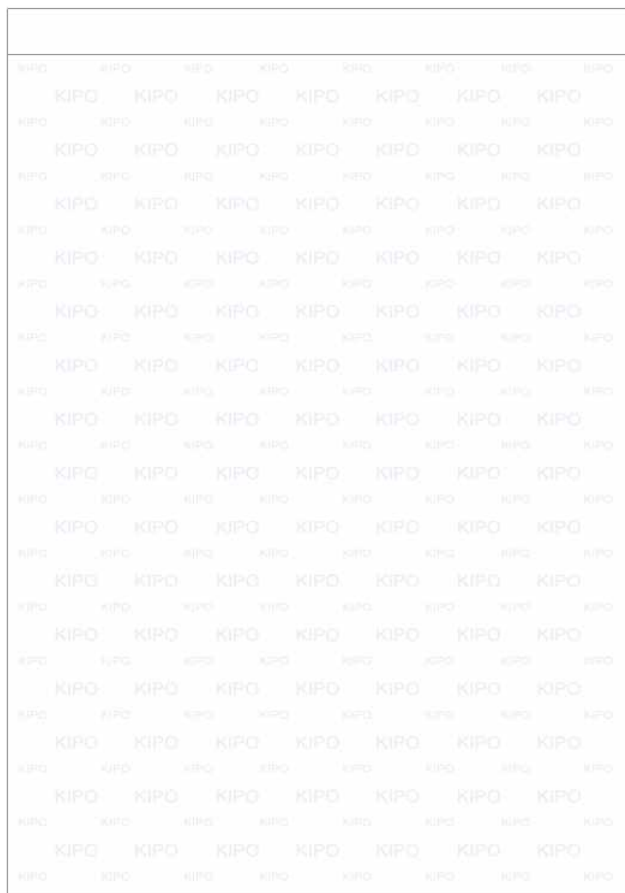
Inventeur

Certifie, selon la loi relative au brevetage et à la propriété industrielle, que l'invention ci-dessus est inscrite dans le registre du bureau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de la Corée.

Directeur général de l'Office coréen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서명

직인



210mm×148mm(보존용지(1종) 120g/㎡)

СЕРТИФИКАТ РЕГИСТРАЦИИ ПЕРЕНОСНОЙ ПОЛЕЗНОЙ МОДЕЛИ

Регистрационный номер

Номер заявки

Дата подачи заявки

Дата регистрации

Название устройства

Правообладатель полезной модел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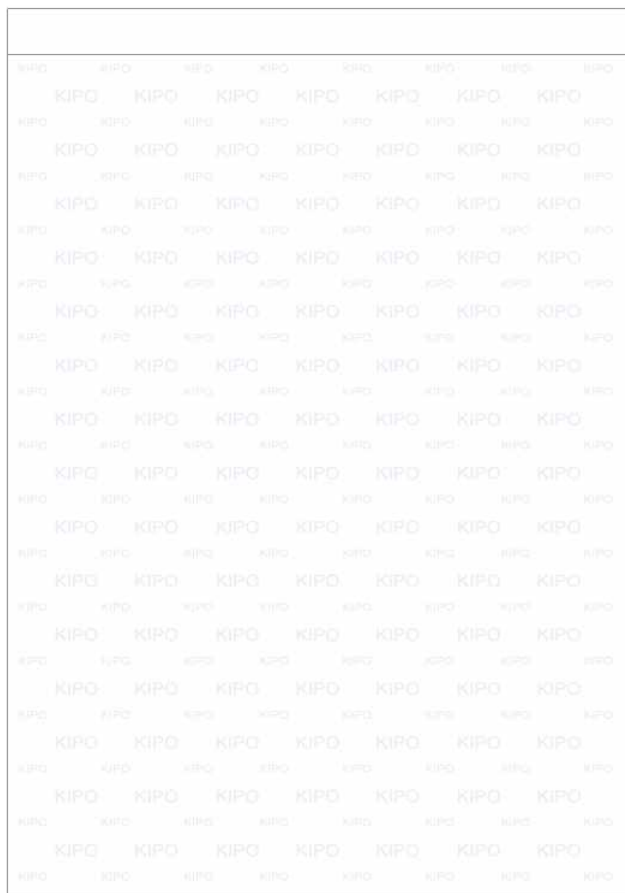
Разработчик

Настоящим подтверждаю, что вышеуказанное устройство за
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в Реестре полезных моделей согласно поло
жений Закона о полезных моделях.

Начальник Патентного Бюро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직인

서명



210mm×148mm(보존용지(1종) 120g/㎡)

CERTIFICADO DE REGISTRO DE MODELO DE UTILIDAD PORTÁTIL

N° de patente

N° de solicitud

Fecha de solicitud

N° de registraci3n

Título del dispositivo

Titular del derecho de modelo de utilid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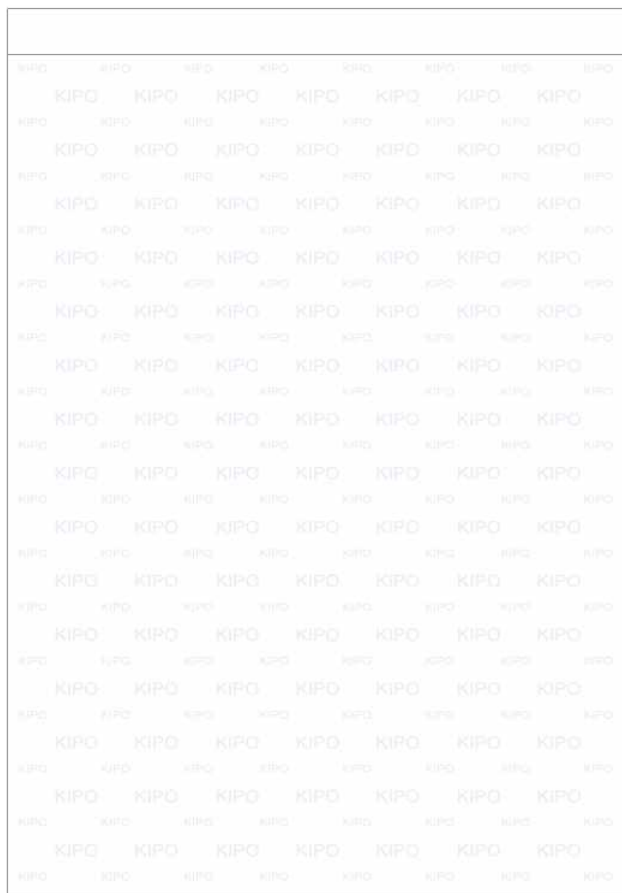
Inventor

Se certifica que el dispositivo arriba mencionado ha sido registrado en el registro dela Oficina de Propiedad Intelectual de Corea de acuerdo a la Ley de Modelo de Utilidad.

Director de la Oficina de Propiedad Intelectual de Corea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직인

서명



210mm×148mm(보존용지(1종) 120g/㎡)

便携式实用新型专利证书

实用新型专利 第 号

申请号 第 号

申请日期 年 月 日

登记日期 年 月 日

实用新型名称

实用新型专利权人

设计人

兹证明上述设计依照《实用新型专利法》已在实用新型专利登记原簿上予以注册。

韩国特许厅长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직인

서명



210mm×148mm(보존용지(1종) 120g/m²)

شهادة تسجيل نموذج المنفعة المحمولة

رقم التسجيل

رقم الطلب

تاريخ الملا

تاريخ التسجيل

اسم الجهاز

صاحب حقوق الاستفادة من الموديل

المصمم الأصلي

هذا للشهادة بأن الجهاز الممثل إليه أعلاه مسجل لدى مكتب سجل حقوق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كوري

رئيس مكتب حقوق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كوري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서명

210mm×148mm(보존용지(1종) 12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실용신안등록출원서 등의 제출) ①·② (생략)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고안의 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략) <u><신설></u> 7. (생략) ④ 제3항제2호·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은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제3조(실용신안등록출원서 등의 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6. (현행과 같음) 7. <u>서열목록(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인 경우에 한정한다)</u>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④ 제3항제2호·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4조(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 ①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이하 “서열”이라 한다)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열목록(이하 “서열목록”이라 한다)을 명세서에 적고, 그 서열목록을 수록한 전자파일(이하 “서열목록전자파일”이라 한다)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4조(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 ① ----- ----- ----- ----- ----- ----- ----- ----- --- <u>수록</u> ----- ----- ----- -----

작성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열목록전자파일 형식으로 명세서에 적은 경우에는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후단 신설>

<신 설>

② (생 략)

제13조의5(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영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서 그 지연된 원인이 출원인에게 있는 기간을 말한다.

1.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서열목록 또는 서열목록전자파일(같은 항 단서에 따라

-----, <단서 삭제> -----

-----, 이 경우 서열목록은 명세서의 고안의 설명에 기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10개 미만의 핵산염기 서열 또는 4개 미만의 아미노산 서열인 경우로서 해당 서열목록을 명세서의 고안의 설명에 기재하려면 서열목록전자파일에 수록하지 않고 명세서의 고안의 설명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3조의5(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

1. ----- 서열목록전자파일-----

<u>서열목록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서열목록전자파일 형식으로 명세서에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u>)을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서열목록 또는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2. ~ 8. (생략)	----- ----- ----- ----- ----- ----- ----- ----- ----- 2. ~ 8. (현행과 같음)
--	--